

[별표 3]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(제세포함)

구분	지급기준			지급액
원고료	한국어 원고지 1 매(200 자)			8,000 원 이내
	외국어 A4 용지 1 매 (MS Word, 25 lines, Times New Roman, 글자 크기 12)			50,000 원 이내
통역료	수행통역 (1 인당 1 일) *초과시 시간당 100,000 원			300,000 원 이내
	국제회의 통역 (/3 시간) *초과시 시간당 100,000 원			300,000 원 이내
번역료	한국어->외국어 A4 용지 1 매 (MS Word, 25 lines, Times New Roman, 글자 크기 12)			50,000 원 이내
	외국어->한국어 A4 용지 1 매 (MS Word, 25 lines, Times New Roman, 글자 크기 12)			30,000 원 이내
속기료	녹음재생 (/1 시간)			350,000 원 이내
	전문분야 (/1 시간)			350,000 원 이내
	외국어속기 (/1 시간)			400,000 원 이내
	요점속기 (/1 시간)			200,000 원 이내
강연료 (원/회)	국내외	1 급	기관장, 저명인사	1,000,000 원 이내
		2 급	수석급, 부교수 이상	600,000 원 이내
		3 급	선임급, 조교수 이상	400,000 원 이내
		4 급	원급 이하 및 내부강연자 (참여인력은 제외)	250,000 원 이내
자문료 (원/시간)	국내외	1 급	책임급(교수급), 기관장, 저명인사	150,000 원 이내
		2 급	선임급(부교수 이하)	100,000 원 이내
기술지도비	1 일 4 시간 기준			200,000 원 이내
위원수당	운영위원회 등 (내부 위원은 지급불가)			200,000 원 이내

- ※ 국내/해외 기준은 해당 전문가의 소속(활동지)을 기준으로 함.
- ※ 강연료 및 자문료의 경우 해외 석학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.
- ※ 외부 전문가 초청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(항공료 및 숙박비에 한함)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.
- ※ 전문가 활용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를 통한 용역의 형태로 집행하는 경우(ex. 통역업체를 통한 통역비 지급 등) 해당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음.